

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이어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명칭을 변경(안 별지10호 서식)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문구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장애인	성명(한글)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장애 유형(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함께 기재)	※문자수신 여부 [] 수신 [] 수신 안함 장애정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성명(한글)	의사면허 번호		
	의료기관명	전문의 번호 요양기관 기호		
	제공 서비스 유형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대상 장애유형:) [] 통합관리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대상 장애유형:)			
	서비스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
변경 사유	장애인	[] 이사 [] 시설·인력·장비 등 불편(구체적 사유 기재:)		
	의료기관 주치의	[] 휴·폐업 [] 공동대표자 변경 [] 퇴사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과 의 관계

전화번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처 리 절 차

